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25-35 관련

발의년월일 : 2025. 6.
발 의 자 : 권영숙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마포 365 구민센터 건강관리센터의 수익 증진 및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범위 감면 적용 (별표 2)

나.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별표 2 마포 365구민센터 건강관리센터 서강동합정동 구민목의 대상란과 사용료란을 삭제한다.

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개 정 안

[별표 2]

개인사용료의 범위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명칭	구분	대상		사용료
마포 365 구민센터	종합 체육관	성인		2,000 ~ 4,000
		청소년		1,500 ~ 3,000
		어린이		1,000 ~ 2,500
	헬스장	성인		2,000 ~ 4,000
		청소년·어린이		1,500 ~ 3,000
	건강 관리센터	서강동 합정동 구민	성인·청소년	5,000 ~ 10,000
			어린이	4,000 ~ 8,000
		마포구민	성인·청소년	6,000 ~ 12,000
			어린이	5,000 ~ 10,000
		타지역	성인·청소년	7,000 ~ 12,000
			어	6,000 ~

수 정 안

[별표 2]

개인사용료의 범위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명칭	구분	대상		사용료
마포 365 구민센터	종합 체육관	성인		2,000 ~ 4,000
		청소년		1,500 ~ 3,000
		어린이		1,000 ~ 2,500
	헬스장	성인		2,000 ~ 4,000
		청소년·어린이		1,500 ~ 3,000
	건강 관리센터	마포구민	성인·청소년	6,000 ~ 12,000
			어린이	5,000 ~ 10,000
		타지역	성인·청소년	7,000 ~ 12,000
			어린이	6,000 ~ 12,000
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	헬스장	성인		2,000 ~ 4,000
		청소년·어린		1,500 ~ 3,000

개 정 안				수 정 안			
			린이 12,000			이	
공덕 실뿌리복지 센터 피트니스 센터	헬스장	성인	2,000 ~ 4,000				
		청소년·어린이	1,500 ~ 3,000				